

美인간·동물유전자특허인정

미국 특허.상표국이 유전자 특허에 대해 전향적인 심사 지침을 발표해 인간과 동물 유전자에 대한 생명공학 기업들의 특허권 획득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특허.상표국이 이날 발표한 지침에는 자연물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을 수용치 않고 천연 염색체 또는 합성 DNA 분자에서 분리해낸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자연물로서, 분리에 성공한 사람들이 창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류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안된다며 유전자 특허를 인정하는데 반대해 왔다.

미국 특허.상표국은 그러나 특허 출원자가 해당 유전자에 대해 "최소한 한가지의 구체적인 실질적이며 신뢰할 만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전자

도 특허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허.상표국은 또 어떤 단계에서든 유전자 특허가 인정되면 기업이나 학계의 추가 연구 및 개발 의욕을 꺾어 의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특허는 발견이나 발명 의욕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완벽한 유전자 염기서열과 유전자의 기능이 밝혀진 후에만 특허 대상이 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허.상표국은 출원자가 그 성분과 제법과 용도를 밝히는 것 만으로도 DNA 특허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인사이트 제노믹스사(社)가 지금까지 5만 개이상의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출원, 500개가 등록됐으며 메릴랜드주의 휴먼 게놈 사이언스사(社)도 1만6000건을 출원, 159개가 특허로 등록됐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 라디오방송국, 美 저작권청의 인터넷음악에 대한 로열티 결정 거부 위한 소송 제기

1. 사건의 발단

o 美 저작권청의 결정

- 라디오방송국의 온라인 방송에 대한 로열티 지급 결정
- 라디오방송국들이 라디오 음악을 인터넷 온라인에 띄우는 것에 대해 로열티를 내야 한다고 2000. 12월에 결정한 바 있음

2. 문제의 쟁점

- o 인터넷방송만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방송국들

은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레코드회사에 내고 있는데, 라디오방송국들이 방송된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에 대한 로열티를 내지 않는다면 이는 라디오방송국에 대해 커다란 특혜를 주는 셈

3. 당사자의 입장

가. 美 저작권청의 입장

- o 인터넷방송이 라디오방송에서 나왔는지 아닌지 불문하고 같은 법률하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들의 의도라고 언급

나. 라디오회사들의 입장

- 로열티 부과에 대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재량의 남용이며, 위법한 행위”라고 비난함. 그러한 로열티 부담은 “쇄도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의 인터넷계재요구를 압살”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

4. 문제의 중요성

- 미국 저작권청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는데 이는 음악을 전세계적으로 공중파에 띄우면서 레코드회사에 대해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있는 방송국들

이 인터넷 방송 관련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최근의 징표임

- 미국 저작권청에서 마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요금체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관련 로열티가 얼마에 달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이 사건은 인터넷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중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슈 중 하나임
- 웹방송에 대한 현재의 시청자수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비해 미미해서 정규시청자의 4%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수는 인터넷에 띄우는 음악이 쇄도함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날 것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일본 기업의 미국 플라즈마표시기관 관련 특허 침해 여부 조사 실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금요일 (1. 19),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플라즈마표시기관(plasma display panel)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 위원회는 위 사건을 45일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및 미국 코네티컷 주 페어필드에 있는 Competitive Technologies Inc. 는 일본의 후지츠 및 그 자회사들이 상기 플라즈마표시기관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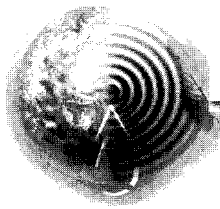
ITC 관계자는 상기 미국의 권리자가 후지츠 그룹 회사들을 상대로 1930 Tariff Act에 근거를 둔 특허 침해금지가처분신청(injunction)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은 상기 특허기술 관련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기 기술제품들은 평면스크린 텔레비전, 모니터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 지재권 이행관련 수퍼301조 평가에서 일부국가에 대해 지재권 보호 강화 요구

지난 금요일(2001. 1. 19)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무역체제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함. 여섯 나라에 대한 정례적인 지재권 이행 관련

수퍼301조 평가에서 미국대표부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함



1. 우크라이나

-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중
 -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불법복제된 광학적 통신제품(optical media products)의 제조, 수출을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동 국가를 중대한 무역제재를 당할 수 있는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Barshefsky 무역대표가 말함
 - 미국의 요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금년 3. 1 까지 불법복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와 아울러 효과적인 저작권 및 광학미디어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법을 입법해야 함
 - 물론, Barshefsky 무역대표의 임기가 지난 금요일로 끝나므로 그러한 결정은 미국의 새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

2. 헝가리

- 감시대상국에 잔류
 - 헝가리는 미국의 기업들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비공개시험데이터의 보호를 하는데 실패해서 계속 감시대상국에 남게 된다고 발표함

3. 마카오

- 감시대상국에 잔류
 - 마카오도 새로운 지적권법의 이행 불충분 및 부적절한 벌칙으로 인해 감시대상국에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미국무역대표부는 밝힘

4. 아랍에미레이트연합

-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미국 무역대표부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불법복제 의약품의 제조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감시대상국의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언급함

5. 슬로베니아

-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음
 - 미국은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도 헝가리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슬로베니아 정부는 더욱 강화된 주의조치(more precautions)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여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게 됨

6. 한국

- 우선감시대상국에 잔류
 - 한국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처하는 법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에 계속 잔류하게 될 것임
 - “우리는 한국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더 개선하고 비공개시험데이터(confidential test data)의 보호를 강화하며, 지적권 당국자간에 더 나은 협력·조정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 Barshefsky는 말함.

브라질, 특허법에 대한 미국의 TRIPs 위반 제소에 대응

브라질 특허법상의 “국내실시”(local working)요건이 TRIPs 규정에 위반된다는 미국의 주장이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제기되자 브라질은 미국도 유사한 국내실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함

1. 문제되는 브라질 산업재산권법 제 68조 규정

- 브라질 1996년 산업재산권법 제 68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브라질 내에서 특허제품을 생산하거나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허가 국내실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동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브라질 정부는 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 특허를 타인에게 실시하여하는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 동 조항은 또한 특허권자가 그 특허의 국내실시 대신 특허품의 수입을 통해서 특허의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 이외의 자도 그 특허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음

2. 미국측 주장

- 미국은 동 조항이 브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이 그 특허제품을 브라질로 수출하고 브라질 내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권의 향유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차별하고 있음

며, 따라서 동 조항이 TRIPs 27.1조 및 28.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TRIPs상의 위 조항들은 특허권자가 향유하는 특허권 및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3. 브라질측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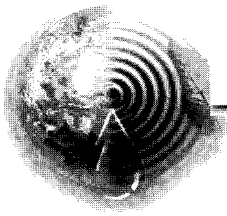
- 그러나 브라질 당국자는 미국이 자국의 특허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기준을 브라질에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미국도 특허보호에 있어서 국내 생산(local manufacturing)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 브라질 관리는 미국특허법(Title 35) 204조와 209조가 문제의 조항들이라고 밝힘. 위 204조에 의하면, 소기업과 대학들이 미국정부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려면 그 발명이 본질적으로(substantially)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내실시”요건의 일종이라고 브라질 관리는 말함
- 또한 미국 특허법 209조에 의하면 미국항공우주국 같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본질적인 생산(substantial production)이 확보되어야 함.

과학 기술 지적 소유권에 관한 새 법령

1월 18일에 열린 러시아 정부 각료 회의에서 국고 지원에 의해 생긴 과학 기술 결과를 어떻게 경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된 논제였다. 과학 기술 산업부 차관인 Boria Aleshin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러시아에는 특히 군수 산업 분야에 많은 과학 기술과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 중 많은 기술들은 군수 목적에 이용할 뿐 아니라 민수 사업에도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적 경

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그 기술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아직 이러한 기술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적 자산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의 지적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민간 업체도 그러한 축적된 과학 기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을 직시하고 과학 기술 산업부는 과학 기술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이용 방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이런 법적 근거를 통해 과학 기술을 상용화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Boria Aleshin 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지적

재산을 신뢰할 만한 민간 기업에 전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는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화를 통해 얻어진 이득은 적정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어떻게 과학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 2001년 중반기에 정부는 지적 소유권 평가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그 법령에는 지적 소유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이다. 이 일을 전담하는 특별한 정부 기관이 신설될 것이다.

국유특허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이 보유한 국유 특허의 취급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제1탄으로서 민간과의 공유특허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공동개발한 기업이나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할 방향으로 관련 성·청과 조정에 들어갔다. 연구진흥국장의 연구회인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시책검토회가 정리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공적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책무로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을 부여하고 국유특허의 산업이용을 촉진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국유 특허 등 국가가 보유한 연구성과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에서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산업계부터는 기업전략의 소재로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는 병폐가 지적되었지만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국립대를 포함한 공적연구기관

과의 공동연구의 촉진이나 국가가 보유한 연구성과의 유통이 활발하여 산업,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에서 얻어진 공유 특허는 국가의 지분을 수의계약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출원 공개 전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여 일반 경쟁 계약이나 공개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으로 공동개발한 기업이나 연구자가 동 특허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에 공유특허를 타 기업에 양도도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 보고서에서는 연구휴직이나 임기부연구원 제도의 절차의 간소화도 요구하는 한편, 연구성과의 권리화를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인력양성프로그램 추진이나 연구자의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법특2001/2·3